

의 안 번 호	제673호
의 결 연 월 일	. . . (제 회)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 의 자	김꽃임 의원 등 7인
발의연월일	2024년 8월 일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김꽃임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673
----------	-----

발의연월일 : 2024년 8월 일

발 의 자 : 김꽃임, 이옥규, 박경숙, 유재목,
이의영, 이종갑, 임병운

1. 제안이유

- 본 조례의 개정은 농촌체험관광 관련 지원사항을 명확히 하여 농촌 체험관광 활성화와 체험마을의 육성을 도모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상위법령에 맞게 용어 정의 및 체계를 정비함 (안 제2·4조)
- 농촌체험관광 지원사업을 현실에 맞게 명확히 함 (안 제7조)
- 충청북도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 규정을 신설(안 제8조의2)

3. 조례안 : 붙임

4. 참고사항

- 관 계 법 령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 조례안예고 : 2024. 8.
- 협 의 : 농정국 농업정책과
- 비 용 추 계 : 붙임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호 중 “마을을”을 “마을로
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을”로 한다.

2. “농촌체험관광”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제4조 및 제5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이하
“체험마을등”이라 한다)
 2. 체험마을 관련 단체
 3. 시장·군수가 추천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등
-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등은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 ③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지원대상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체험마을의 기반 정비 지원
 4. 체험마을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체험마을 및 체험마을 관련 단체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
 6.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체험마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 중 “체험마을 운영자”를 “체험마을등의 운영자”로 한다.

제8조제2항 중 “체험마을”을 “체험마을등의”로 한다.

제8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의2(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는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협의회 회의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업무 담당과장

나. 체험마을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촌체험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협의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협의회 심사·자문이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협의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제2항 중 “체험마을”을 “체험마을등”으로 한다.

제10조제1항 및 제2항 중 “체험마을”을 각각 “체험마을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체험마을 등”을 “체험마을등”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정의)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농촌체험관광”이란 농촌 주민들이 마을의 역사·문화, 자연경관 등의 부존자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체험·휴양·숙박·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함은 물론 지역의 농수산물과 특산품을 가공·판매하여 소득을 증대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농촌체험관광”이란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에 따른 사업을 말한다.
3. “체험마을”이란 농촌체험관광을 목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려는 마을을 말한다.	3. ----- ----- ----- 마을로 법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로 지정된 마을을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제4조(지원대상)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이하 “체험마을 등”이라 한다)는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거나, 시장·군수가 추천하거나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 등으로 한다. 다만,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	제4조(지원대상 등) ① 이 조례에 따른 지원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운영 실적이 우수하다고 인정되는 체험마을 또는 체험마을연합체(이하 “체험마을등”이라 한다) 2. 체험마을 관련 단체 3. 시장·군수가 추천하거나 도지

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농촌 체험관광 사업이 지속적으로 확대 될 수 있도록 시설확보 및 기반정비 사업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체험마을 등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체류형 농촌체험관광 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충청북도내 농어촌체험·휴양마을 사업자로 지정된 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

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체험마을등

② 제1항에 따라 지원할 수 있는 체험마을등은 마을 전체 가구의 3분의 1 이상이 참여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지원대상에 대하여 「충청북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라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5조(지원내용) ① 도지사는 농촌 체험관광의 육성 및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농촌의 자연환경, 영농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촌체험관광에 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체험마을의 기반 정비 지원

4. 체험마을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체험마을 및 체험마을 관련 단체의 안정적 경영을 위한 사무장 인건비 지원

6. 농촌체험관광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2.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④ 제3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도지사는 체험마을 사업의 올바른 이해와 활성화를 위하여 체험마을 운영자 등에게 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시장·군수 등이 추천한 체험마을 운영인력이 전문성을 갖추 수 있도록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7. 체험마을 사업자가 운영하는 숙박시설의 투숙객에게 숙박비의 100분의 50 범위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지역사랑상품권 또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온누리상품권 등을 지급하는 사업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절차 및 방법 등 세부사항은 도지사가 정한다.

제7조(전문가의 자문 및 교육) -----
----- 체험마을등의 운영자 -----
-----.

제8조(전문인력의 육성)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체험마을등의 -----
-----.

제8조의2(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① 도지사는 다

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북도농촌체험관광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1. 제3조에 따른 활성화계획의 수립 및 변경

2. 농촌체험관광 활성화를 위한 사업방향 제시 및 정책건의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농촌체험관광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협의회의 구성은 다음 각 호와 같이 한다.

1. 협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위원장은 농정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 호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위원은 협의회의 회의를 개최할 때마다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가.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업

제9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생략)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자매결연을 맺고 활발히 활동하고 있는 체험마을에는 편의시설 등의 개·보수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도지사는 농촌체험관광 사업을 추진하려는 체험마을에는 시장·군수로 하여금 관리·감독 및 평가를 실시하도록 한다.

무 담당과장

나. 체험마을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다. 농촌체험관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협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농촌체험관광 업무 담당 팀장이 된다.

③ 제3항에 따라 임명 또는 위촉된 위원의 경우 그 협회의 심사·자문이 종료되면 해임 또는 해촉된 것으로 본다.

④ 협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제9조(자매결연의 활성화) ① (현행과 같음)

② -----

----- 체험마을등-----
-----.

제10조(지도감독 및 평가) ① -----

----- 체험마을등-----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우수한 체험마을에는 포상 및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평가결과에 따라 사업실적이 부진한 체험마을들에 대해서는 다음 연도 지원액을 변경하거나 지원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② -----
----- 체험
마을등-----

③ -----
----- 체험
마을등-----

-----.

충청북도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사업개요

- 도시와 농촌 간 교류를 촉진하고 농촌체험마을을 육성하여 관광과 체험을 접목함으로써 도시민들에게 휴식을 제공함은 물론 마을의 소득증대 및 농촌의 활력화 도모

2. 비용 발생 요인

- 체험마을 기반 정비 지원비, 보험 가입비, 사무장 인건비 지원비, 체험마을 유가증권 구입비 보조 등(조례안 제5조 1항)

3. 관련조문

- 안 제4조(지원대상 등)
- 안 제5조(지원내용)

4.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으로 함
- ※ 추계기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비용이 발생할것으로 예상

나. 추계 결과

○ 농촌체험휴양마을 분야 보조사업(마을보험 가입 지원 외 5종)

- (기존) 마을보험 가입 지원 : $666\text{천원} \times 78\text{개소} \times 5\text{년} \approx 260,000\text{천원}$
- (기존) 역량강화 교육 지원 : $294\text{천원} \times 78\text{명} \times 5\text{년} \approx 114,750\text{천원}$
- (기존) 사무장활동비 지원 $2,061\text{천원} \times 17\text{명} \times 12\text{개월} \times 5\text{년} \approx 2,102,275\text{천원}$
- (기존) 명품마을 선정 지원 : $97,000\text{천원} \times 5\text{년} = 485,000\text{천원}$
- (기존) 농촌체험 한마당행사 지원 : 24년 : $35,000\text{천원} \times 1\text{식} \times 5\text{년} = 175,000\text{천원}$
- (기존)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 1,105,650천원
 - 24년 : $39\text{마을} \times 21\text{일} \times 6\text{개월} \times 25\text{천원} = 122,850\text{천원}$
 - 25년 ~ 28년 : $39\text{마을} \times 21\text{일} \times 48\text{개월} \times 25\text{천원} = 982,800\text{천원}$

다. 재원조달방안 : 국비, 도비, 시·군비, 수익자부담(휴양마을사업자)

5. 연도별 비용추계서 : 붙임

6. 작성자 : 농정국 농업정책과장 강찬식

〈 연도별 비용 추계표 〉

(단위 : 천원)

구 분	1차년도 (2024년)	2차년도 (2025년)	3차년도 (2026년)	4차년도 (2027년)	5차년도 (2028년)	계
세 출	750,255	873,105	873,105	873,105	873,105	4,242,675
마을보험 가입 지원	52,000	52,000	52,000	52,000	52,000	260,000
역량강화 교육 지원	22,950	22,950	22,950	22,950	22,950	114,750
사무장활동비 지원	420,455	420,455	420,455	420,455	420,455	2,102,275
명품마을 선정 지원	97,000	97,000	97,000	97,000	97,000	485,000
농촌체험한마당 행사 지원	35,000	35,000	35,000	35,000	35,000	175,000
체류형 관광 활성화 지원	122,850	245,700	245,700	245,700	245,700	1,105,650
재원 조달	750,255	873,105	873,105	873,105	873,105	4,242,675
국비	31,737	31,737	31,737	31,737	31,737	158,685
도비	279,847	341,272	341,272	341,272	341,272	1,644,935
시군비	352,181	413,606	413,606	413,606	413,606	2,006,605
수익자부담	86,490	86,490	86,490	86,490	86,490	432,450

관련법령 발췌

□ 도시와 농어촌 간의 교류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 4의5. 생략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이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가 마을의 자연환경, 전통문화 등 부존자원(賦存資源)을 활용하여 도시민에게 생활체험·휴양공간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이와 함께 지역 농림수산물 등을 판매하거나 숙박 또는 음식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業)을 말한다.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란 제5조에 따라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운영하는 자로 지정을 받은 마을협의회 또는 어촌계를 말한다.

제6조(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육성 및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1. 농어촌의 자연환경, 영농·영어(營漁)활동, 전통문화 등을 활용한 생활체험·휴양자원의 개발
 2.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관한 홍보와 도시민의 유치 활성화
 3.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따른 기반 정비
 4.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 중 발생하는 재해에 대비하기 위한 보험 또는 공제 관련 사업
 5.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의 경영 지원
 6.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조사·연구
 7. 그 밖에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자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 해양수산부장관 및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시장·군수 등에게 농어촌체험·휴양마을사업에 필요한 정보 제공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다.